

##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년 2월 23일

오산시의회의장

###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상복 의원 발의)

#### 1. 제안이유

- 「스포츠클럽법」이 신설되고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일부 개정으로 지방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는 등 상위법령이 개정된 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

#### 2. 주요골자

- 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의 수정 (안 제2조)
-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부합하도록 개정함 (안 제21조)

#### 3. 조례안 : 붙임

## 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4년 2월 28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 - 우편번호 : 18132
 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 - 전 화 : 031)8036-8033
  - 전자메일 : aragu@korea.kr

## 오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생활체육진흥법」”을 “「생활체육진흥법」, 「스포츠클럽법」”  
으로 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「생활체육진흥법」 제2조제5호”를 “「스포츠클럽법」 제2조  
제1호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지원할 수 있다”를 “지원하여야한다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, 「생활체육진흥법」, 「학교체육진흥법」에 따라 오산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“스포츠클럽”이란 「생활체육진흥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.</p> <p>제21조(체육회 운영비 지원)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<u>지원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「생활체육진흥법」, 「스포츠클럽법」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「스포츠클럽법」 제2조제1호----- -----.</p> <p>제21조(체육회 운영비 지원) ① --- ----- ----- ----- <u>지원하여야 한다.</u></p>